
부속합의서 양식

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

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 (이하 '작가')와 ____ [미술관 / 비영리 전시기관] (이하 '전시기관')이 20__ . __ . __. 체결한 전시계약(이하 '본 전시계약')에 관하여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다.

제1조(목적)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계약에 따라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(이하 '작품')을 전시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작품의 온라인 전시)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다음과 같다.

1. 전시명 : (가칭) ____
2. 작품명 : (가칭) ____
3.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: 20__ . __ . __. ~ 20__ . __ . __.
오전 __시 __분 ~ 오후 __시 __분.
4. 전시공간 : (웹사이트 주소) ____

제3조(디지털 이미지의 생성 및 이용) ① 전시기관은 작가와 협의된 촬영방법에 따라 작품을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고, 생성된 디지털 이미지의 품질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전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만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할 수 있으며, 그 외의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전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촬영비용은 전시기관이 부담한다.

제4조(기술적 조치) ① 전시기관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사진이 무단으로 복제(단,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)될 수 없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전시기관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견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, 작품명, 작품의 재료 및 크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시기간의 종료) ① 전시기관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전시공간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
② 전시기관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삭제하여 누구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에 참여한 모든 작가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, 작가와 전시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부속합의서 체결일 : 20 년 월 일

작 가 : 인

주 소 :

전시기관 :

주 소 :

대 표 자 : 인